## Ⅱ전용벤처타운 무상사용허가 동의안

의 안 번 호 128

제출연월일: 2007. 5. 4.

제 출 자:대전광역시장

## 1. 제안이유

대덕연구개발특구내 IT벤처기업을 위한 완벽한 인프라 구축으로 최적의 기업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경쟁력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『IT전용벤처타운』시설물의 관리·운영에 전문성 있는 대전광역시첨단 산업진흥재단에 무상사용 허가코자 의회동의를 구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가. 목 적: IT벤처기업에게 입주공간 및 판로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나. 위 치 :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

다. 규 모 : 부지 9,414m², 건축연면적 9,313m²

라. 허가기간 : 3년(갱신연장 가능)

마. 관리 · 운영기관 : (재)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

#### 3. 참고사항

가.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(공유재산심의)제1항제5호

나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(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)제4항제4호

# 『IT전용벤처타운』건립

- 첨단산업의 핵심산업인 IT산업집적화로 기업의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활성화 도모
- 성장단계에 있는 IT벤처기업에게 안정된 입주공간 제공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## □ 사업개요

● 위 치 :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

● 규 모 : 부지 9,414m², 건축연면적 9,313m²/ 지하1층, 지상5층

● 사업기간 : 2004. 5 ~ 2007. 6

● 총사업비 : 10,500백만원(국비 4,486, 시비 6,014)

● 주요시설: 비즈니스지원실, 공용장비실, 멀티이벤트실, 테스트베드룸 등

※ 기업입주예정 : 25개 기업

## □ 그동안 추진상황

● '04. 5 : IT전용벤처타운 기본계획 수립

● '04. 10 : 재정투・융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

● '05. 11 : 중기지방재정 계획반영

● '06. 2 : 건축공사 착공

● '07. 4 : 건축공사 96% 공정율

### □ 향후계획

● '07. 5 : 기업유치 모집공고 및 선정

● '07. 5 : IT전용벤처타운 시설관리 · 운영 협약체결(대전광역시+대전첨단산업진흥재단)

● '07. 6 : IT전용벤처타운 준공

● '07. 7~9: IT전용벤처타운 기업입주 및 개관

#### □ 기대효과

- IT전용벤처타운 시설관리·운영전문화를 통한 효율적인 기업지원 활성화 증진
- IT·SW산업 관련기업의 기술개발 및 시설·장비사용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
#### ※ 의회동의 관련근거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(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)제1항제4호(지방의회동의)

## 관 계 법 령

#### 《공유재산심의》

-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) 제1항제5호
  - ① 공유재산심의회의(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대행)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- 5. 그 밖에 공유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## 《사용・수익허가》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(사용·수익허가) 제1항
  - ① 행정재산등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.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(사용・수익허가의 방법) 제3항제8호
  - ③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"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  - 8. 당해 시·도, 시·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·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·수익허가하는 경우

#### 《사용료》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(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) 제1항제4호
  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    - 4. 천재·지변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·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(사용료 면제 ) 제4항제4호
  - ④ 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"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- 4. 제 13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*지방의회의 동의를* 얻은 경우

#### IT전용벤처타운 무상사용허가 동의안

# 심 사 보 고 서

2007년 5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

## I. 심 사 경 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5월 4일 대전광역시장

2. 회 부 일 자 : 2007년 5월 7일

3. 상 정 일 자: 제166회 대전광역시의회(임시회)

제4차 산업건설위원회(2007. 5. 22)

상정, 심사, 원안가결

## Ⅱ. 제 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: 경제국장 이진옥)

#### 1. 제안이유

○ 본 동의안은 대덕연구개발특구내 IT벤처기업을 위한 완벽한 인 프라 구축으로 최적의 기업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경쟁력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『IT전용벤처타운』시 설물의 관리·운영에 전문성 있는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에 무상사용 허가코자 의회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,

## 2. 주요내용

가. 목 적: IT벤처기업에게 입주공간 및 판로지원으로

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나. 위 치 :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

다. 규 모 : 부지 9,414㎡, 건축연면적 9,313㎡

라. 허가기간: 3년(갱신연장 가능)

마. 관리?운영기관: (재)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

## Ⅲ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장예순)

○ 본 동의안은「IT전용벤처타운」이 2007년 6월 준공될 예정임에 따라 지역 첨단산업 업무의 총괄조정 등을 위해 설립된 첨단산업진흥재단에 무상대부 하여 IT밴처기업의 성장지원과 지

역경기 활성화를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17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으로,

- 금번 동의안은 IT전용벤처타운의 시설관리·운영의 전문화를 통하여 대전지역 IT·SW산업관련 정보·인력·기술·제품을 한곳에 집적시켜 기업활동 여건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한 당위성에서는 바람직한 사항으로 판단됨
- 그러나 시 공유재산을 첨단산업진흥재단에 무상대부시 운영관 리비등을 매년 시에서 지원함에 따른 재원확보 문제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센터운영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 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Ⅳ. 질의·답변요지: 생 략

Ⅴ. 토 론 요 지:생 략

Ⅵ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W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